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자치행정과	1

(2015. 12. 4)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 안 건 명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11월 17일(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11월 20일(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검토보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 제안이유 >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 및 운영방향에 관한 대응 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정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 가.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안 제2조)
- 나. 마을만들기 사업 기능으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에 관한 정책제언,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안 제3조)
- 다. 협의회 구성은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위원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장)(안 제4조)
- 라. 협의회 임원은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안 제5조)
- 마.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안 제6조)
- 바.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2)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함(안 제13조)

아. 효율적인 운영과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안 제14조)

자.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안 제15조)

차. 사무국 설치(안 제16조)

1)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둠

2)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함

카. 공동 경비부담(안 제17조)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경비부담

< 참고사항 >

1. 예산조치 사항

○ 2016년 본예산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200만원 반영

※ 매년 연회비 : 200만원 예산 반영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해야 됨.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우리 구가 지난 2015. 9. 10.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이후, 수원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정식으로 협의체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협의체 설립은 불가하나 행정협의회 설립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협의회 회원인 우리 구에서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하는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임

○ 그 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2013. 9월
-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언“ 발표
-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결정(전국 시군구 단체장협의회)
- 4개 광역자치단체, 52개 기초자치단체 참여(서울시 20개 자치구 참여)
- ▶ 시·군·자치구 단체장협의회체 신청(수원시=> 행정자치부)-----2015. 9월
- ▶ 협의회체 설립 불가 및 행정협의회 구성 통보(행정자치부=> 수원시)--- 2015. 10월
-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에 따른 안내(수원시 마을만들기추진단
-7575호)----- 2015. 10. 26.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200회 임시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구의회 상정----- 2015. 11. 17.

○ 본 동의안은 2013. 9월 전국 시군구 단체장협의회에서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언“을 발표하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지난 2015. 9. 10. 수원시 외 50개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결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우리 구에서는 2009. 12. 31. 마포구의 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 및 사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 3년간 도화동 주민자치위원회-어린이들 엄마아빠랑 우리동네 사진찍기외 72개사업에 2억 9,333만 7천원의 사업추진 실적이 있었고,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얻고 있는 등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마을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본 동의안은 2013. 9월 전국 시군구 단체장협의회에서 제6회 마을만들기 전국 대회를 개최하여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언“을 발표하면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5. 9. 10. 수원시외 50개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결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하는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임
- 우리 구에서는 종전에 마포구의 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 및 사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해 2009. 12.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여러 가지 마을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고,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으로는 도화동주민자치위원회-어린이들 엄마아빠랑 우리동네 사진찍기외 72개 사업에 사업비 2억 9,333만 7천원으로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우리 구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국제 컨퍼런스, 연수 프로그램 등 교류와 교육참여 및 홍보를 통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우리 구에 도입하여 추진한다면 향후 마포구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서 의무이행을 위해 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 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 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 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참 고 자 료

-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



수원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에 따른 안내

1. 수원시 마을만들기추진단-6524(2015.09.15)호 및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5527(2015.10.23)호와 관련입니다.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이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서울 은평구 혁신파크, 2015.09.10)」 에서 성황리에 종료됨에 따라

3. 수원시에서 상임회장의 자격으로 지방자치법 제165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마을만들기추진단-6524(2015.09.15.)호로 행정자치부(자치행정과)에 「협의체 설립 신고」 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5527(2015.10.23.)호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 로 구성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른 행정협의회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임 규정안을 송부하오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자치단체에서는 본 법령에 따라 제반절차(의회의결, 고시)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아울러 출범식에 참석하지 못한 자치단체를 위해 창립총회 회의자료를 첨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정안 및 설명자료 1부.

2. 협의체 설립신고 공문 및 첨부서류 1부.

3. 행정자치부 회신문서 1부.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 회의자료 1부. 끝.

수원시장

광명시장(미래전략실장), 군포시장(자치행정과장), 김포시장(행정지원과), 부천시장(원도심지원과장), 시흥시장(주민자치과장), 안산시장(자치행정과장), 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 관악구청장(자치행정과장), 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 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 양천구청장(자치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자치행정과장), 정선군수(자치행정과장),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안성시장(교육협력과장), 오산시장(지역경제과장),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마을만들기과장), 사천시장(기획예산담당관), 함안군수(기획감사실장), 함천군수(기획감사실장),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주민자치과장), 광주광역시북구청장(주민자치과장), 광주광역시서구청장(주민자치과장), 광주광역시남구청장(지역경제순환과장), 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강서구청장(자치안전과장), 구로구청장(자치안전과장), 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 도봉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 성동구청장(마을공동체담당관), 성북구청장(마을담당관), 은평구청장(희망마을담당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지혜로운시민실장), 담양군수(지역경제과장), 해남군수(지역개발과장), 무주군수(마을만들기사업소장), 완주군수(농업농촌정책과장), 전주시장(공동체지원과장), 정읍시장(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진안군수(전략산업과장), 논산시장(평생교육과장), 아산시장(사회적경제과장), 충주시장(건축디자인과장), 강릉시장(기획예산과장), 경기도지사(따복공동체지원단장),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담당관), 강원도지사(총무행정관), 광주광역시(참여혁신단장), 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

수신자

주무관

단장

협조자

시행 마을만들기추진단-7575 (2015.10.26.) 접수 자치행정과-24840 (2015.10.26.)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수원시청) / <http://www.suwon.go.kr>
전화 031-228-2611 /전송 031-228-3725 / eauyo@korea.kr / 공개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비(경비부담) 및 비용추계서

▶ 회비 : 기초자치단체 연 2,000천원, 광역자치단체 연 5,000천원

▶ 비용추계서(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금 액
회비수입	▶기초자치단체 회비 2,000 × 60개 = 120,000 ▶광역자치단체 회비 5,000 × 4개 = 20,000	140,000
회비지출		140,000
회의운영	▶정기회의 개최	5,000
	▶실무협의회 운영	5,000
제도개선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제정 확대	5,000
	▶마을만들기 제도개선 방안 공동연구 추진	20,000
	▶마을만들기 정책토론회 개최	10,000
역량강화	▶마을만들기 국제 컨퍼런스 개최	10,000
	▶마을만들기 연수프로그램 운영(국내/국외)	45,000
공동협력	▶마을만들기 관련 정부지자체 정보공유 웹사이트 운영	20,000
	▶마을만들기전국대회 공동개최 및 홍보부스 운영	10,000
	▶협력사업 추진	10,000

▶ 2016년도 예산반영 여부 : 예산안 반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토대구축,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 비용부담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계약) 협의회의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 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주요사업**

사업분야	세부추진사업	비고
제도개선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제정 확대 ▶마을만들기 제도개선 방안 공동연구 추진 ▶마을만들기 정책토론회 개최	상시 2016 상반기 반기별 1회
기반구축	▶마을만들기 관련 전담부서 신설운영 확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확대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체계 운영 확대	상시 상시 상시
역량강화	▶마을만들기 국제 컨퍼런스 개최 ▶마을만들기 연수프로그램 운영(국내/국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	2016. 5월 분기별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공동협력	▶마을만들기 관련 정부지자체 정보공유 웹사이트 운영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공동개최 및 홍보부스 운영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와 협력사업 추진	2016 상반기 2015. 9월 상시

□ **최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의회 상정 현황**

연번	자치구	현황	내용
1	강 동 구	○	동의절차 진행 중
2	강 북 구	○	동의절차 진행 중
3	강 서 구	×	동의절차 시기 미정
4	관 악 구	×	동의절차 시기 미정(다음 회기)
5	광 진 구	×	동의절차 시기 미정(다음 회기)
6	구 로 구	○	동의절차 진행 중
7	금 천 구	○	동의절차 진행 중
8	노 원 구	○	동의절차 진행 중
9	도 봉 구	○	동의절차 진행 중
10	동대문구	×	동의절차 시기 미정
11	동 작 구	○	동의절차 진행 중
12	마 포 구	○	동의절차 진행 중
13	서대문구	○	동의절차 진행 중
14	성 동 구	○	동의절차 진행 중
15	성 북 구	○	동의절차 진행 중
16	양 천 구	○	동의절차 진행 중
17	영등포구	×	동의절차 시기 미정
18	은 평 구	○	동의절차 진행 중
19	종 로 구	×	동의절차 시기 미정(다음 회기)
20	중 구	○	동의절차 진행 중